

의안번호	2201435
의 퇴 인	노종면 의원
회 답 일	2024. 9. 10.
추 계 번호	24B169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점용 허가한 고가도로 하부의 시설물에 대해 매년 화재대비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88억 5,700만원(연평균 17억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실시 (안 제62조제8항 신설)	1,699	1,735	1,771	1,808	1,844	8,857	1,771

- 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이 점용 허가한 모든 고가도로 하부의 시설물에 대해 매년 화재 대비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고가도로 하부에 대한 점용 허가 건수 증감 및 실제 화재점검 등 실태조사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8항 신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화재·붕괴 및 범죄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8항 신설	○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고가도로 하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화재 대비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3.)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2	2.2	2.1	2.1	2.1	2.0

(단위: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고가도로 하부 설치 시설에 대한 화재·붕괴 및 범죄발생 가능성, 도시미관 저해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2조제8항 신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현행법 제62조제6항²⁾에 따라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과 별도로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³⁾에 따라 관할 도로구역에 대한 불법점용 및 안전저해 요인 등 점검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순찰을 실시중임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고가도로 하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화재 대비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재영향평가 등 전문적인 평가는 건당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해, 개정안에 따른 고가도로 노면 하부 시설물에 대한 화재 대비 현장점검은 전문기관인 엔지니어링업체에서 간단한 기구를 사용하여 화재 위험성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건당 40만원 소요 가정
 - 화재 대비 현장점검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 실태조사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이 점용 허가한 고가도로 하부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되, 고가도로 하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 건수 자료가 없어, 국가가 관리하는 고가도로 하부에 대한 점용허가 건수 대비 점용료 징수 건수 비율을 활용하여⁴⁾ 지방자치단체의 점

2)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제4조(도로의 순찰등) ① 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관할도로구역 및 점도구역에 대하여 정기순찰 및 수시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

용료 징수 건수를 바탕으로 허가 건수를 추정

[표 2] 고가도로 하부 점용료 징수 건수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비율(%)
한국도로공사	19	19	16	54	18	14.3
지방국토관리청	4	5	5	14	4.7	3.7
지방자치단체	103	102	104	411	103	82.0
합 계	126	126	125	377	125.7	-

자료: 국토교통부

[표 3] 지방자치단체 고가도로 하부 도로점용허가 관리건수 추정

(단위: 건)

연 도	허가건	징수건 (연평균)	비율(%)	비고
한국도로공사	572	18	2.96 ($= (18+4.7)/(572+195)$)	조사값
지방국토관리청	195	4.7		조사값
지방자치단체	3,480 ($= 103 \times 100 / 2.96$)	103	2.96 (국토청·도공 평균값)	추정값
합 계	4,247	125.7	2.96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이 점용 허가한 고가도로 하부의 시설물에 대해 매년 화재 대비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년간 88억 5,700만원(연평균 17억 7,100만원)으로 추계됨

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4,247건 × 40만원 = 1,699백만원
- 추계기간 중 고가도로 하부에 대한 점용허가 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화재 대비 현장점검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표 4] 고가도로 하부 설치 시설에 대한 화재 점검 등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	1,699	1,735	1,771	1,808	1,844	8,857	1,771

주: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이 점용 허가한 모든 고가도로 하부의 시설물에 대해 매년 화재 대비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고가도로 하부에 대한 점용 허가 건수 증감 및 실제 화재점검 등 실태조사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이 점용 허가한 모든 고가도로 하부의 시설물에 대해 매년 화재 대비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고가도로 하부에 대한 점용 허가 건수 증감 및 실제 화재점검 등 실태조사 단가 변동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